울산 신정동 풀비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12.29)이후 시행되는 새로운 주택청약제도가 반영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 10. 06(목)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 인쇄물은 홍보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99-5번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울산광역시는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주택법 제38조 2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입니다.
- ■ 이 주택은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13.05.31./2015.02.27.)으로 인해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 및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이 완화되고,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 특별공급이 확대 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축소(85㎡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함.
  -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이 완화되어 유주택자 (1주택자 이상)에게도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합니다.(단, 수도권보금자리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를 자격 부여)
- ■ 이 주택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형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등)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가점제40%, 추첨제60%)
- ■ 본 아파트는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인의 청약자격사항(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조유여부 등)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는 2순위 청약도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청약시스템 APT2you (www.apt2you.com)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부적격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 자격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의거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한 자로 명단이 전산관리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신청자격별,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전매행위 및 재당첨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의 지역 비투기과열지구 중 민간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및「동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 청약지역 확대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청약가능지역을 해당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내지 3항에 의거하여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1. 건설위치 및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 47689 (2016.10.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47-8번지 외 2필지
- ■ 대지면적 : 1,256.9㎡
-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8층 1개동 총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 공급대상 : 총 51세대 중 일반분양 42세대, 특별공급 9세대(일반 3세대, 다자녀 3세대, 신혼부부 3세대 포함)

(단위 : ㎡, 세대)

구 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세대					최저층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분양	계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아파트	2016001283-01	84.9690	84A	84.9690	26.5710	111.5400	38.2796	149.8196	14.7376	1	1	1	13	16	
	2016001283-02	84.6979	84B	84.6979	26.2781	110.9760	38.1574	149.1334	14.6905	1	1	1	13	16	
	2016001283-03	78.9546	78C	78.9546	25.5741	104.5287	35.5700	140.0987	13.6944	1	1	1	13	16	
	2016001283-04	78.7817	78D	78.7817	26.1902	104.9719	35.4928	140.4647	13.6644	0	0	0	3	3	
	공급세대 합계									3	3	3	42	51	

2. 공급가격

■ 공급일정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세대)

주택형	공급세대	층구분	해당세대	분양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회(5%) 계약시	2회(5%) 1개월내	1회(10%) (2017.01.23)	2회(10%) (2017.05.22)	3회(10%) (2017.09.22)	4회(10%) (2017.12.22)	5회(10%) (2018.03.22)	6회(10%) (2018.06.22)	30% 입주지정일
84.9690 남향	16	3층	1	125,763,000	214,137,000	339,900,000	16,995,000	16,995,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101,970,000
		4층	1	128,390,000	218,610,000	347,000,000	17,350,000	17,35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104,100,000
		기준층	14	131,054,000	223,146,000	354,200,000	17,710,000	17,710,000	35,420,000	35,420,000	35,420,000	35,420,000	35,420,000	35,420,000	106,260,000
84.6979 남향	16	3층	1	125,134,000	213,066,000	338,200,000	16,910,000	16,910,000	33,820,000	33,820,000	33,820,000	33,820,000	33,820,000	33,820,000	101,460,000
		4층	1	127,761,000	217,539,000	345,300,000	17,265,000	17,265,000	34,530,000	34,530,000	34,530,000	34,530,000	34,530,000	34,530,000	103,590,000
		기준층	14	130,351,000	221,949,000	352,300,000	17,615,000	17,615,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105,690,000
78.9546 남향	16	3층	1	117,882,000	200,718,000	318,600,000	15,930,000	15,93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95,580,000
		4층	1	120,324,000	204,876,000	325,200,000	16,260,000	16,26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97,560,000
		기준층	14	122,766,000	209,034,000	331,800,000	16,590,000	16,590,000	33,180,000	33,180,000	33,180,000	33,180,000	33,180,000	33,180,000	99,540,000
78.7817 서향	3	기준층	3	115,736,000	197,064,000	312,800,000	15,640,000	15,64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93,840,000

(공통 유의사항)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당첨 및 동호수 배정은 해당 주택형의 모든 동호수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배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단지전체공용면적을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과 실제 공용면적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하층 층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까지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합산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동 · 호수는 지정할 수 없으므로 전산추첨 결과 배정된 동호의 주택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이며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 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단지 내 비주거시설상업시설 등)는 본 공급 대상이 아닌 별도의 공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분양계약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 투입된 때로서,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중 50%공정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에 대출 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60% 내에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주며, 입주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해야 함(중도금 무이자제)
- ※ 중도금대출 신청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지세-75,000원)은 계약자 부담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및 확정측량 등으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면적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청약 접수일시/장소	당첨자 선정일시/장소	동호배정 발표일자 (일반공급분과 동일)
84.9690 84.6979 78.9546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2016.10.11(화) (10:00~14:00) 울산 남구 신정동 699-5번지 당사 홍보관	2016.10.11(화) (17:00) 울산 남구 신정동 699-5번지 당사 홍보관	2016.10.19(수)

※ 공통사항

가. 당첨자 선정 및 공고 유의사항
- 당첨자선정 및 공고 일시와 공고방법은 특별공급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및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내용 및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합니다.
- 특별공급의 당첨자선정 순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일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과 동일(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참조)

나. 특별공급 유의사항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한차례에 한정하며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건만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 신청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은 무효 ·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주택소유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취소 · 해제될은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일반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제40조에 의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주택형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 ※ 각 청약통장으로 지역별 예치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면적에 모두 청약가능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 +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1-1) 일반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

■ 공급 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 합니다.

구 분 (㎡)	84.9690	84.6979	78.9546	소 계
공급 세대수	1	1	1	3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국가유공자 등)을 받으신 분(단, 특별공급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제외).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인정서류를 발급받은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선정합니다.

1-2)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공급 세대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 합니다.

구 분 (㎡)	84.9690	84.6979	78.9546	소 계
공급 세대수	1	1	1	3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 (입양아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중 영유아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3세대는 직계비속으로 구성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기간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신청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 미만	10	
		1년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적용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관련사항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74호(2015.12.29.)에 따름.

1-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공급 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 합니다.

구 분 (㎡)	84.9690	84.6979	78.9546	소 계
공급 세대수	1	1	1	3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으로 산정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의 수는 각각으로 산정)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신청서류 제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 [신청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진단서, 임신지속시 임신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함]
-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함)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구분	2015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4,816,665이하	5,393,154이하	5,475,403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779,998이하	6,471,785이하	6,570,484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6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475,403원)+(1인당 평균소득(329,369원) X (N-5)) *N-6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만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 전원의 소득 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19세 이상 직계존 · 비속의 소득도 합산합니다.(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용)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가 종교기관의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등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아래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관련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입주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1)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2)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위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1-4)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신청시 (배우자 포함)	일반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인정서만 인정함[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로 청약신청 불가])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제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 ·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입양 입증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 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 가족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단해 시 · 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무주택서약서(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함)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 받고자 하는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임신증명서류(자녀를 임신중인 경우)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의료보험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소득 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징구)
제3자 대리인신청시 추가사항	공통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관련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 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사업)소득 사실증명서(현재 무직자라 하더라도 전년도 및 금년도 소득이 발생했던 경우 소득 입증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접수장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	84.9690	84.6979	78.9546	계
일반 특별공급	1	1	1	3
다자녀 특별공급	1	1	1	3
신혼부부 특별공급	1	1	1	3
계	3	3	3	9

2) 일반공급

가. 신청자격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단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이므로 기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로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기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취소 또는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일반공급 전세대(전용면적 85㎡이하)를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합니다.

나. 입주자 선정방법
-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순위요건" 및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서(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를 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주택형별 접수마감여부는 접수당일 오후 9시 이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간 및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 소유 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주거전용면적 기준)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납입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신청가능 전용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이후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주택의 규모를 상향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 ■ 19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 초과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순위 자격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관련)
-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이 가능함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관련)
-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구분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하단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 가점제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제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8호 [별표1])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후 부양가족수 산정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이상~2년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이상~3년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총점	84	/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비수도권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주택(이하"소형 · 저가주택"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합니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세대주 자격 필수)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가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합니다.

3) 청약 신청방법

- ■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1,2순위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 특별공급(일반 특별공급분,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홍보관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동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중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 ■ 청약 접수시 유의사항
  - 청약 신청접수일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하며,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되오니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기재방법
    - ①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06) 현재 주민등록 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②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됩니다.
-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소형,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모집공고(2016.10.06)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비수도권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자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2016.10.06)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2016.10.06)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06)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4. 일반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 분	순위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 주택	1순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2016.10.12.(수)	* 접수장소 : 인터넷(08:00~17:30) – 기타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일시 : 2016.10.19(수) * 장소 : 당사 홍보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2순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2016.10.13.(목)	* 접수장소 : 인터넷(08:00~17:30) – 기타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완료 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 청약관련 예금 및 신청자격
  - 1순위
    - 85㎡ 이하 : 가점 · 추첨제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총 납입금액이 주택형별에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 전주택형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 ※ 은행방문접수 : 2순위 인터넷접수 참가은행(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09:00 ~ 16:00
-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인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계약 취소,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추후 당사 일정에 따라 모집합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및 국민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2) 2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 계좌 개설자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여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 (www.kbstar.com) 접속 ▶KB부동산 ▶주택청약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금융결제원홈페이지 (www.apt2you.com) 접속 ■APT인터넷청약 ▶청약신청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 2009년 4월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00~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08:00~17:30)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 방법	
전주택형	100만원	창구 청약 시 (09:00~16:00)	청약을 접수하는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시 (08:00~17:30)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에 본인 계좌에서 자동인출(청약신청 전 계좌잔액을 100만원 이상유지)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6.10.20) 이후 평일 09:00~16:00(토, 일, 공휴일 제외)
- 환불방법 : ① 인터넷 청약신청자 – 청약신청금 출금 계좌로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② 창구(방문) 청약신청자 – 청약접수한 은행 본, 지점에서 직접 환불(단, 청약자 본인의 접수은행 계좌로 자동 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또는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서(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에 한함)
제3자 대리 환불시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 사항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위임장(청약자의 인감 날인) 1통 –제3자의 신분증 및 인장

- · 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 한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2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낙첨자에 대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주자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 공급	· 당사 홍보관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홍보관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 · 호 배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의 부적격 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일반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모두해당)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0.06) 현재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 85㎡이하평형은 40% 가점제 60%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로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최초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을 공개한 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합니다.(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당첨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홍보관에 별도 공고함

-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홍보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및 홈페이지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접속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6.10.19.~2016.10.28(10일간)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 코드 : 9 → 1 → 3]	전자금융공동망(1369)[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2016.10.19.~2016.10.28(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청약신청시 SMS 당첨통지 서비스를 신청한 자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6.10.20(목). 08:3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1.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일시
  - 정당당첨자 : 2016. 10. 24(월) ~ 2016. 10. 26(수) (3일간, 시간 10:00 ~ 16:00)
- 계약체결장소 : 당사 홍보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99-5번지 / 문의전화 : 052-256-2488)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임을 당첨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본인이 부적격자임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2. 계약시 구비 서류

구 분	구비사항
정당당첨자 (본인 계약 체결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금 입금확인증(계약당일 아래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 · 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에혼인하여 혼인기간을 무주택기간 가점에 산정한 자에 한함) · 직계존 · 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홍보관에 비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06)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재(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 시)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1부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7일)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법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며, 계약하여도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공급계약서」에 준함.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공통)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지정은행 본 · 지점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1-749760	대한토지신탁(주)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중도금대출 보증수수료 제외)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이에 따른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 예비당첨자에 대한 추첨 및 계약안내
  - 정당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대상자 소명기간(부적격당첨자통보일로 부터 7일) 이후 예비당첨자 동 · 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18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일전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1.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공통)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품목
①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포함) 거실, 침실, 주방, 식당, 복도 바닥마감재,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바닥방수, 시멘트몰탈(난방배관시공부위만 해당)
②	벽체 및 천장	우물천장인테리어마감, 벽지(아트월, 타일, 무늬목, 쉬트 도장등 포함), 천정지(도장포함), 발코니 도장(벽체, 천장)	천장틀 및 석고보드, 커텐박스, 환기시설, 스프링클러, 경량칸막이벽, 콘크리트벽체 견출마감, 조적부 미장마감
③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욕실 및 주방매입등	매입등(욕실, 주방제외), 전기배관,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등)
④	욕실	타일,석재(바닥), 강화대리석(세면대 뒷선반 등) 욕실장,샤워부스,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천장, 액체방수(바닥, 벽체) 바탕처리
		욕조,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비데	설비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 전기배관, 배선
⑤	주방가구	주방가구(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주방가전류(가스쿡탑, 전기오븐, 렌지후드, 주방TV 등)	소방검사 관련 자동식자단기
		주방수전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시스템
⑥	가구	신발장,붙박이장,화장대(상판 및 벽체강화대리석포함) 수납장	–
⑦	창호	창호(문틀, 문짝, 문선, 하드웨어 포함)	목재가틀(사춤 및 욕실문하부실 제외), 현관방화문, 도어락, 소방관련 방화문

※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 원)

주택형	옵션금액
84.9690	24,820,000
84.6979	24,570,000
78.9546	22,990,000
78.7817	23,020,000

3.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1)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2)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3)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4)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5)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타 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6)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7)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9)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10)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11)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의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3)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14)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15)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사, 시공사로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하여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홍보관
- 홍보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홍보관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홍보관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의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홍보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홍보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합니다. (일부 사항은 설계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 등의 절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대리석(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 세면대 뒷선반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바닥, 배면 등)은 별도 마감이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타입에 따라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의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이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팬트리 포함) 또는 침실붙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또는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세대내 발코니에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주택공급신청서[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가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의 정리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등기 시 공급면적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에 따른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홍보관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홍보관을 우선으로 함)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단순비교는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확정측량 결과,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에 따라 소형 구조,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시설 및 마감 변경요구)이나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청약 및 계약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방음벽 · 안전난간 등의 종류 · 높이 · 위치 ·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나 층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TOP LIGHT(천창), 상가, 관리동,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을 저감하도록 계획함에 따라, 층간소음 ·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계산 배분됩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지상주차 및 주차장 진 ·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시항은 본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 · 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향후 입주후에도 주변 건축물 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지 남측 15m도로 대지경계선에서 0.5m, 서측 8m도로 건축선에서 당해 대지안으로 2m 계획되어진 보행자 통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지며, 소유자분양예정자 포함)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준공 후 보행자 통로는 건축물 소유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니며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채로,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채로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채로에 따라 창호의 형태나 크기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위치가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 의해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서측 8m 도로에 주출입구가 위치합니다.
- 야간조명 효과, 야간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당 부지는 주변 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로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의 배치에 따라 일조 및 조망이 다를 수 있으며,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권 등이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 대비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대한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추후 확장, 소방, 이삿짐 구획으로 활용 될 수 있음)
- 단지 내 재활용 창고, 쓰레기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 D.A. 조경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이동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가능 높이는 최소 2,300mm 이상입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남측, 동측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를 주택과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1층과 2층에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및 옥상의 난간 및 돌출부에 의해 저층세대에 조망, 일조 및 프라이버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실외기, 환기 시스템 및 공조 시스템, 이용객 등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 커뮤니티시설 및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근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고층이하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되며, 이러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의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홍보관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바랍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수전 및 바닥배수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홍보관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단위세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 등은 홍보관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의 일부 조명 및 스포조명은 전시용입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배관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 경로,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주체의 협의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통합검토 결과에 따라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등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시설은 본 아파트 분양과 관계없는 별도의 분양시설로 추후 건축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획, 입주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시설의 입주시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설비 및 제연 시설물의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식재계획, 미술작품 등의 설치는 각종 심의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실제 시공시 단지조경 시설물, 식재, 포장 및 미술작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홍보관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견립세대 내,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 등은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내 용	설치 사양 및 성능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에 직/간접 면한 창호의 기밀성능은 KS F2292 기준 1등급 제품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급수펌프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적용, 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지식경제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및「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에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 가능한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회사	감리금액	비고
건축	태림건축사사무소	174,900,000	
전기	탑이앤지(주)	78,305,700	
소방			
통신			

- ■ 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16-104-0003400호	12,242,160,000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ㅇ 보증사고의 정의(보증약관 제1조 제5호)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서울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라. 시공자가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ㅇ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3조)
  -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복리시설의 경우 복리시설을 분양받은 보증채권자 전부의 실제 분양계약상 의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복리시설분분에 대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각 보증채권자에게 분양계약상 의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준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ㅇ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입주금은 제외함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15.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 분양형 토지신탁
  - 본 아파트는 위탁자 "주식회사 고려주택건설", 수탁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시공사 "주식회사 동부토건" 간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탁자는 관련 법률 및 본 공급계약 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하자담보책임 배상,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부지향후 사용검사 예정인 본 건축물을 포함한 신탁계약 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주식회사고려주택건설"과 수탁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사업주체")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의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 및 책임부담은 위탁자에게 공급 계약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 부대복리시설
  - 옥상 휴게공간 및 주민운동시설, 북카페 등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수탁사)	시공사	위탁사
상 호	대한토지신탁(주)	(주)동부토건	(주)고려주택건설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삼성동, 아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 301호 (부전동, 한솔폴라리스)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88, 6층 (신천동)
등록번호	110111-1492513	194211-0049040	170111-0588197

- ▣ 홍보관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99-5번지
- ▣ 분양문의 : ☎(052)256-2488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홍보관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동 고려 풀비체 현장 및 견본주택

아파트 84㎡ / 78㎡, 오피스텔 84㎡

분양문의 052) 256-2488

시행 대한토지신탁(주) DAEHAN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INC. 시공 (주)동부토건 위탁 (주)고려주택건설 KORYEO HOUSING CONSTRUCTION CO.,LTD.